

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41조제2호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작동조건

차폭등, 후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

나. 표시장치

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. 다만, 계기판넬 내의 조명이 차폭등·후미등과 동시에 점등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휘도는 별표 6의13 제2호에 따른 휘도기준에 적합할 것